
2017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5차 추가 수시 모집요강
[직장인무시험전형]



산업체 위탁교육[직장인무시험전형]이란?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제공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대학의 총장과 산업체 기관장의 협약에 의해 지식정보화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인격을 성장시켜 현장에서 보다 탁월한 능력으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모집학과 및 선발인원

계열	학과명	주·야구분	수업연한	모집인원
인문사회	세무회계과	야간	2년	33명

- * 지원학과는 산업체 근무 직종(근무 범위)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 모집인원의 50% 이상 등록 시 개설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일정

1. 접수일정 및 접수장소

구분		장소	비고
입학원서 접수	창구	우리대학교 입학홍보팀 (본관 104호)	10:00 ~ 16:00 (토, 일, 공휴일 제외)
	우편	(우 153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교로 155번지 안산대학교 입학홍보팀	마감일 16:00 마감

주)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iphak.ansan.ac.kr>)에서 입학원서 및 관련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원서접수일	합격자발표 및 등록기간	비고
2017.02.28(화)	2017.02.28(화)	우리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주1) 합격통지서는 개별통지(발송)하지 않으며 기간 내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iphak.ansan.ac.kr>)에서 출력하여 국민은행(전국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2)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지원 자격

필수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9개월 이상 재직 경력자	▶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9개월 이상(2017.3.1 기준) 재직·경력자 * 산업체 재직·경력 산정 : <u>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u>
9개월 이상 재직 경력 불필요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1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전문계고 이수자(17.2월 졸업예정자 포함)

1) 산업체 범위 : 2017.02.28 기준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② 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및 신문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 ③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 ④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⑤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 ⑥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근로기준법 제11조)
- ⑦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⑧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

-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식 이후부터 산업체 근무경력 산정
- ② 검정고시 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취득일과 관계없이 산업체 근무경력 산정
- ③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기간 중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산업체 근무기간 인정 (다만, 실업계고등학교 등 정규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현장실습 등은 산업체 근무경력에서 제외)

전형반영방법 : 무시험 전형 (서류심사)

* 다만, 모집단위의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시 現 산업체 장기 근무자 우선으로 선발 함

전형료 : 20,000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입학원서 1부 (대학양식)	우리대학교 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iphak.ansan.ac.kr)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출신 고등학교 (시 · 도교육청)
	▶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산업체
	▶ 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가입 서류 중 택 1	
	일 반 산업체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1부 - 고용보험피보험 이력내역서 1부 -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산재)보험인터넷서비스
	개 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납세사실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9개월 이상 재직 경력자	위탁교육계약서 2부 (대학양식)	우리대학교 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iphak.ansan.ac.kr)
9개월 이상 재직 경력 불필요자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1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17.2월 졸업예 정자 포함) : 위탁교육계약서 3부 (대학양식)	우리대학교 입학홈페이지 다운로드 (iphak.ansan.ac.kr)
일반고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1년) 추가서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위탁직업교육과정 확인용) * 학교생활기록부로 위탁직업교육과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업과정 이수(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출신 고등학교

주1)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만 인정

주2) 4대보험 가입자는 개인 공인인증서(은행용)로 해당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증명발급 가능

주3) 입학자는 2017.02.28 기준 공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최종 제출

주4) 공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비대상자 제출서류

① 영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사실증명원 각 1부 (국세청)

② 농·어업인 :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각1부 (국가·지방자치단체)

다만,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 · 어업인의 배우자도 위탁교육 가능

위탁생의 신분

- 1)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한 위탁생은 우리대학교 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며 우리대학교의 학칙을 적용받습니다.
- 2) 위탁생은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졸업사정에 의해 졸업하며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졸업 후 우리대학교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 운영 안내

- 1) 산업체는 단독 또는 연합으로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 2) 별도 학급으로 구성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모집인원의 50% 이상 등록 시 개설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합격자 발표 및 추가모집 안내

추가합격자 발표	▶ 미등록 및 입학포기로 인한 여석 발생 시 예비순위 순으로 총원 - 총원기간 : 등록마감일 ~ 총원시까지(단, 2017.02.28(화) 종료) - 총원방법 및 등록 : 개별 연락하며 등록일은 개별 연락 시 통지 ▶ 총원합격 통보 당일 연락두절(5회)자는 자동 총원합격(총원합격 미등록자)자로 간주되어 처리되며, 차순위자를 총원함. 연락두절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 연락처 변경 시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변경 요청서] 작성 후 우리대학교 입학홍보팀(fax.031-400-7097)로 반드시 변경신청, 연락처 미 변경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 총원 합격 발표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기본사항(생년월일 등) 확인 절차를 진행하오니, 등록 안내(기간 및 절차 등) 이외에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주의 바람
추가모집	▶ 여석(미등록 및 입학 포기자) 발생 시 추가모집 실시 ▶ 모집 인원 및 일정은 향 후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반환하지 않음)

구분		내용	
기간	온라인	등록일 ~ 2017.02.28(화) 09:00 ~ 16:00	우리대학교 홈페이지(iphak.ansan.ac.kr)
절차	온라인	유의사항 확인 → 본인인증 → 신청서작성 → (대학)신청내역확인 → 환불(계좌반환)	
유의사항		▶ 등록 후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우리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대학교 입학홍보팀에 입학포기각서를 제출 ▶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요청은 수험생 본인이 직접해야하며 부득이 한 경우 직계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수험생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참(예, 대리자 신분증 및 관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 ▶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수험생은 반드시 <u>1개 대학만 등록</u>하여야 하며, 타 대학 이동시에는 반드시 기 등록 대학 입학포기(환불) 후 이동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사항(연락처, 계좌번호 등)은 변경이 불가함 ▶ 입학포기(환불) 신청 후에는 우리대학교의 입학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로 반복할 수 없음 ▶ 입학일부터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지원자 유의사항

1. 산업체 장의 추천과 우리대학교와 산업체장과의 위탁교육에 관한 계약을 성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1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17.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고교-대학-산업체 장과의 위탁교육에 관한 계약 성립)
2. 우리대학교는 학업능력이 아닌 특정학생(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수험생[특수교육시설 및 신체장애우(수학이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이나 선천성 질병이 있는 자, 제3자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자 등)]은 수업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031-400-7053)에서 상담 바랍니다.
3.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추천으로 회사와 학교가 위탁교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형태로 지원자는 재학 중 계약의 주최인 소속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 시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됩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예외 적용)
5. 매년 3월, 9월(연2회) 위탁교육생들의 산업체 재직여부 확인합니다.
: 재직증명서 및 공적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가입확인서 택 1) 제출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1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17.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6. 접수 완료된 서류는 일체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7.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안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지원자의 단순변심, 서류미제출, 지원 자격 불일치 등은 전형료 환불이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지원 시 모집요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지원하기 바랍니다.
 -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지원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또는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 * 전형료 반환 대상자가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반환받기 원하는 경우, 금융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잔액을 반환하며,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 미 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전형료는 우리대학교에 귀속됩니다.
 9. 입학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및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학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기 납부한 등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됩니다.)
 10. 부정한 방법(경력, 서류위변조 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기 납부한 전형료, 등록금 등은 전액 우리대학교에 귀속됩니다.
 11. 모집인원의 50% 이상 등록 시 개설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모집요강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3. 기타 민원 및 모집요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합니다.

학사관리 유의사항 [교육부 지침]

1. 재직 여부 확인

- 1) 매년 3월, 9월(연 2회)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확인
- 2)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1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17.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3) 제적기준

- 위탁교육생이 **자발적**으로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처리**함이 원칙
 -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음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다른 산업체 이직 시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2. 학사 운영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다만, 재입학 당시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

장학제도 [2016학년도 기준]

1. 산업체위탁 장학금 : 신입생 전원 특별 장학금 지급

구분	입학금(a)	수업료(b)	등록금(a+b)	특별장학금	실 납부액
1학년 1학기	710,000원	2,723,000원	3,433,000원	899,600원	2,533,400원
1학년 2학기 ~ 졸업시까지	-	2,723,000원	2,723,000원	544,600원	2,178,400원

2. 성적우수 장학금

3. 일반 장학금

4. 안산시 산업체근로자 교육 위탁 장학금(안산시에서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 교내장학금과 이중 수혜 가능) - 등록금 50%이내

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http://www.kosaf.go.kr>)

6.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http://www.workdream.net>)

문의처

구분	부서	연락처
입학관련	교무처 입학홍보팀	031-363-7700~1
등록관련	행정지원처 회계팀	031-400-7003, 6916
교내장학금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	031-400-7053, 6986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기숙사 관련	예지관 사무실	031-363-7733~4
학과 관련 문의	세무회계과	031-400-7035